

문화창조아카데미 운영규정

제정 2016. 10. 17.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제 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른 문화창조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아카데미는 창조산업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융합 콘텐츠의 기획, 연구, 제작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인재(이하 “크리에이터”라 한다)를 발굴·육성·배출한다.

제3조(교육목표) 아카데미는 문화·예술·기술·인문 분야의 융합 지식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창조산업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조직) 진흥원 원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원장과 전임 교원을 임명하고,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본원의 제 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아카데미 원장

제6조(아카데미 원장의 권한과 책임) ① 아카데미 원장은 아카데미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아카데미를 대표한다.

② 아카데미 원장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학사운영, 전임교원의 복무, 아카데미 세부예산 편성 및 집행, 아카데미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보임의 경우 아카데미 원장은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아카데미 원장은 진흥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아카데미 원장의 신분) ① 아카데미 원장의 신분은 전문계약직으로 하며, 대우는 진흥원 부원장에 준한다.

② 아카데미 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아카데미 원장의 선임) ① 아카데미 원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진흥원 원장이 임명한다.

② 아카데미 원장이 공석 또는 유고일 경우, 진흥원 원장이 아카데미 원장을 겸직하거나 아카데미 원장을 대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아카데미 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아카데미 원장의 해임) 아카데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

1. 아카데미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한 경우
3. 부정청탁, 자격미달, 허위경력 기재 등이 드러나 아카데미 원장의 임용이 취소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아카데미 원장의 평가)** ① 진흥원 원장은 아카데미 원장의 아카데미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재임기간 중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임기만료 당해 년도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평가절차를 완료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진흥원 원장은 전 항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의 마련 및 평가 방법 수립, 평가시행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아카데미 원장의 보수) 아카데미 원장의 보수는 진흥원 부원장에 준하며, 시간외 수당 및 직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연봉으로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진흥원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원

- 제12조(교원)** ① 아카데미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전임교원은 진흥원에 상근직으로 고용되어 아카데미 전문과정의 크리에이터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비전임교원은 아카데미의 필요에 따라 초빙되어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전임교원의 역할) 아카데미 전임교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학기별 전문과정의 강의기획, 강사섭외, 학업성취도 평가
2. 전문과정의 강의, 크리에이터 지도 및 면담
3. 크리에이터 선발계획 수립, 충원 및 선발 심사
4. 크리에이터 취·창업 및 투자유치·사업화 지원
5. 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대외협력 추진
6. 기타 전문과정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전임교원의 신분) 아카데미 전임교원의 신분은 전문계약직으로,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전임교원의 채용) ① 진흥원 원장은 아카데미 원장과 협의하여 전임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채용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비전임교원) ① 아카데미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비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의 위촉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보수, 복무, 평가) 교원의 보수, 복무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아카데미 교원 보수, 복무 및 평가 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카데미 원장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아카데미 원장, 전임교원, cei아카데미본부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카데미 원장이, 간사는 교육운영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참석대상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아카데미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크리에이터 입학 정원, 전형 세부방법, 입학시기, 교육비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크리에이터의 학업 평가 및 학기통과·수료에 관한 사항
 4. 크리에이터의 출·결석, 휴·복학, 제적, 재입학, 편입 등에 관한 사항
 5. 크리에이터의 포상, 징계, 연구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
 6. 수업일수, 휴강 등 기타 전문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흥원 원장 및 아카데미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진흥원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아카데미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아카데미 교원 보수, 복무 및 평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진흥원 원장 및 아카데미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제 5 장 교육과정

제21조(교육과정) ①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전문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카데미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과정) ①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2년 6학기제로 한다.

② 전문과정은 기본 과정, 프로젝트 과정,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구분하되, 전문과정의 신설·개정·폐지는 전문분야 인력 수요와 아카데미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기본 과정 : 타 분야의 영역간 이해와 공유를 위한 기본 과정
2. 프로젝트 과정 : 프로젝트 기획, 연구, 제작을 지원하는 과정
3. 인큐베이팅 과정 : 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 과정

제23조(특별과정) ① 아카데미는 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해 정원 외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의 운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